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9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김영진 · 채현일 · 이연희
백혜련 · 김남준 · 신정훈
노종면 · 김 윤 · 이해식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0만원”을 각각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백만원”을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1천만원
2.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700만원

제8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생 략)

-----제4항에 따른
금액-----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
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
른 수소전기자동차: 1천만원
2.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 700
만원

⑤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7 –